

February 18,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22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동향 (2020. 2. 10. ~ 2. 14.) -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국토부1]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20. 2. 7.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자율주행 인프라 설계 구축 기간(최대 2년), 서비스 운영기간(최대 3년) 등을 고려한 5년 범위 내의 시범운행지구 지정, ② 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등의 규제특례를 받아 유상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서 등 제출 의무화, ③ 자율주행협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의 정의 구체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운영제도 마련](#)



[\[참고자료\] \(법령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참고자료\] \(규제영향분석서\) 자율주행차법 시행령](#)



[\[참고자료\]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자율주행차법 시행령](#)



[\[참고자료\] \(법령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참고자료\]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자율주행차법 시행규칙](#)



[국토부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예정

2020. 2.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의결됨 (시행일: 2020. 2. 21). 주요 내용으로 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 근린생활에 대하여 그린벨트로 이축 가능화, ② 도시철도 차량 기지 내 유희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 허용, ③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그린벨트 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 허용 등이 있음

[\[참고자료\]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산자부 등] FTA 지원사업(총 5,652억원 규모) 통합 공고

2020.2.11. 7개 정부부처 및 14개 유관기관의 2020년도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함(총 5,652억원 규모). 주요 내용은 ① FTA 활용촉진을 위해 원산지증명을 효과적으로 취득하도록 지원, ② FTA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농식품 20대 수출상품 집중 육성 등 지원, ③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조정자금 등 지원, ④ 한 중 FTA 활용지원을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20년의 FTA 활용 정부지원사업을 한눈에 알아보자](#)



[중기부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공포

2020. 2. 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공포됨.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상 투자제도를 통합하여 국내법상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최초로 규정(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② 민간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의 혁신성 성장성 등을 중점 심의 및 확인하는 방식의 벤처기업확인제도 전면 개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있음

[\[참고자료\] 벤처제도 개선 벤처투자법 벤처기업육성법 공포](#)



[중기부2] 2020년 모태펀드 출자 공고(모태펀드 1조 3천억원 출자 등)

2020. 2. 13. 모태펀드 출자 공고를 통해 10개 부처가 역대 최대 예산인 1조 1,065억원 및 회수재원 1,910억원 등 총 1조 2,975억원을 벤처펀드에 출자할 것을 발표함. 분야별 특징으로 ① 스타트업 펀드[창업초기(4,800억원), 청년창업(1,100억원), 소재부품장비(1,100억원), 규제 샌드박스(500억원) 등], ② 점프업 펀드[혁신성장(3,000억원), M&A(4,000억원) 등] 등이 있음

[\[참고자료\] 모태펀드 출자 공고](#)



[과기부1] 강소특구별 맞춤형 기술사업화 추진

지난해 지정된 6개 강소특구(대학, 연구원 등 중심의 소규모, 고밀도의 공공기술 사업화 거점 연구개발특구: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모델의 본격적인 육성 시작. 올해 특구별로 배정된 예산 약 72억원을 지역에 배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6개 강소특구에서는 ① 지역 소재 민간 수요처와의 협업을 통한 민간 수요 반영, 판로개척 지원 등 운영(김해, 진주, 포항), ② 기술사업화 지원기관들을 기술사업화 전단계에 매칭 및 연계(창원, 안산, 청주)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참고자료\]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의 첫걸음](#)



[과기부2]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신규 사업 추진

2020. 2. 12. 민간주도의 지능정보 서비스산업 육성 계획 발표.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0억원 상당의 실증지원을 통해 5G기반 디지털트윈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특히, 올해 2개의 과제(총 95억원)를 자유공모로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으로서, 디지털트윈 활용 안전관리 수요를 보유한 정부기관, 지자체, 기업 및 컨소시엄 등도 모두 참여 가능

[\[참고자료\] 2020년도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신규 사업 추진](#)



[과기부3]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착수

2020. 2. 13. ICT 분야의 유망 중소 벤처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ICT 미래 유니콘 육성’ 프로그램 추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신용보증기금의 최대 100억원 성장자금 보증 지원, ②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고성장 ICT 투자펀드 조성, ③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3개월간 해외 현지 고객사 발굴 등이 있음

[\[참고자료\]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글로벌 미래 유니콘 육성 착수](#)



[과기부4] 5G 실감콘텐츠 신시장 창출 프로젝트 추진

2020. 2. 14. 5G 이동통신 실감콘텐츠 신시장 창출을 위한 ‘5G 실감콘텐츠 신시장 창출 프로젝트’ 사업공고를 진행함. 주요 내용으로 ① 실감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150억원 규모), ② 공공서비스 산업현장에 실감콘텐츠를 적용하는 XR+α 프로젝트 추진(150억원 규모), ③ 3월 중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감콘텐츠 정책협의회 개최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20년 실감콘텐츠 신시장 창출 본격 지원](#)



[기재부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회의 개최

2020. 2. 12. 혁신지향 공공조달 ‘20년 추진계획’에 따라 혁신수요 발굴 및 혁신구매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 주요 방안으로 ①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4,100억원 수준)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 ② 조달청의 혁신제품 300개 이상 지정, ③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대한 각 부처별 일정 발표(산자부 5월, 중기부 6월, 과기부 8월 등)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3차 혁신조달 범정부 추진단 개최](#)



[기재부]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관련

2020. 2. 12.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20개 시행규칙의 개정 추진 계획 발표.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의 국외위탁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②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의 원석 및 나석 범위 규정(관세법 시행규칙), ③ 민사조정법상 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도 손금산입 허용(법인세법 시행규칙) 등이 있음

[\[참고자료\] 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보도자료](#)



[\[참고자료\] 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상세본](#)



[문체부] 문화산업 펀드 통한 2,300억원 규모의 자금 조성

2020. 2. 13. 2,300억원 규모의 문화산업 펀드(지난해 조성액 1,968억원 대비 16.9% 증가) 조성할 예정임. 주요 내용으로 ① 콘텐츠 모험투자,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콘텐츠 지식재산권 등 6개 분야 펀드 조성, ② 투자액의 51%를 3년 이하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 ③ 올해 600억원 출자해 800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되는 콘텐츠 모험투자 자금을 2022년까지 4,500억원 규모로 조성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작 초기 등 콘텐츠 모험 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내용 중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금의 청구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일선 공공기관으로부터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선급금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공사대금의 청구방법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인력소개소의 임금 대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私)기성도 전자조달대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38조의4 및 제99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인)]

최근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과거 가격경쟁방식에 의해 결정된 최초 경매가격을 고려하는 것은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재할당 주파수의 경우에는 예상 매출액보다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항 및 제16조 제4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에는 앱을 유통하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운영중에 있으나 결제에 한정된 것이며 법적 강제성이 없어 앱 마켓 관련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에 앱 마켓사업자를 추가로 규정하고, 앱 마켓사업자에게 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며, 해외 앱 마켓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는 등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앱 마켓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2조제13호·제14호, 제22조의 6 및 제22조의7 신설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2인)]

2020년 8월 5일 시행 예정인 일부개정법률은 신용정보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조회회사로 세분화하고 있고, 신용정보회사 외에 채권추심회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채권추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실채권 매입 등 채권추심업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채권추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등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하는 자가 부실채권 매입 및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소송·조정·중재의 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업무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 11조의3 신설, 제14조제2항제2호, 제52조제5항제2호의4 등).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30호 입법예고)]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 5. 1.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등)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실용적인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02-316-4630

✉ dybae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02-316-4432

✉ sbkim@shinkim.com



홍정아
선임외국변호사

☎ 02-316-4487

✉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 02-316-1773

✉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 02-316-2573

✉ jeroh@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 02-316-1777

✉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